



아람회 사건

【결정사안】

1980. 5.~1981. 7. 사이 금산, 대전 등지에서 동창생 등으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교사,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신분의 박해전 등 11명이 친목모임을 갖거나 대화를 한 내용을 빌미로 대전경찰서가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을 적용,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처벌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대전경찰서는 한 고등학생의 제보를 받고 피해자들이 주거지, 식당 등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일 내지 35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자백을 받았고, 이 자백을 근거로 하여 반국가단체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하였음이 밝혀졌다.

2. 대전지검은 충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일부 수사관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대전지법에 기소하였다.

3. 대전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결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서울고법은 반국가단체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4.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512, 라-8462, 라-9424, 라-9790 아람회 사건

【신청인】 박해전 등 7명

【결정일】 2007. 7. 3.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동창생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있던 교사 또는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등이 1980. 5.에서 1981. 7. 사이에 금산, 대전 등지에서 모임을 갖거나 대화를 한 것을 이유로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한 사건이다.¹⁾

1981. 7.경 대전경찰서는 박해전(당시 26세), 정해숙(당시 47세), 황보윤식(당시 32세), 김창근(당시 26세), 이재권(당시 25세), 김현철(당시 25세) 등 6명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소지 및 배포, 계엄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용(당시 25세), 박경옥(당시 22세), 최재열(당시 19세) 등 3명을 불고지 혐의로 각각 강제연행하여 조사하였고, 김이준(당시 43세), 박진아(당시 42세) 등 2명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다음 대전지방검

1)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12명으로 박해전은 숭실대학교 재학중, 정해숙, 황보윤식, 신용, 박경옥은 교사, 김창근은 경찰관, 이재권(사망)은 금산마을금고 직원, 김현철은 대전지방경찰청 금산지청 직원, 최재열은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학생, 김이준은 숭실대학교 강사, 박진아(사망)는 전업주부, 김난수는 육군대위의 신분이었다. 이들 중 박해전·김창근·이재권·김현철·김난수 5명은 1973, 1974년에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이고, 황보윤식은 이들의 역사교사였으며, 신용·박경옥은 황보윤식과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에 재직하던 동료교사이고, 최재열은 그 학교 학생이었다. 김이준은 박해전의 숭실대학교 은사이고, 박진아는 김이준의 처이다. 정해숙은 1970년대에 금산 지역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찰청(이하 대전지검이라 한다)에 송치하였다.

1981. 9. 7. 대전지검은 이들의 혐의 중 이적단체구성 혐의를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변경하여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하였다.

1982. 2. 11.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이라 한다)의 1심 재판을 시작으로 1983. 6. 14. 대법원의 재상고심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재판결과, 박해전 등 11명에게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내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형이 선고, 확정되었다.

한편, 현역 육군대위였던 김난수(당시 27세)는 1981. 8. 대전경찰서에서 국군 제507보안부대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군검찰에 송치되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1982. 1. 16.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고, 김난수와 검찰은 위 판결에 대해 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에 차례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1983. 12. 23.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난수는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²⁾

이 사건의 피해자 12명 가운데 박해전, 정해숙, 김창근, 김난수는 2006. 1. 10.에, 황보윤식, 김현철 등 6명 및 피해자 이재권(사망)의 처 박천희는 2006. 11. 30.에 각각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의혹 사항

1. 불법감금 여부

피해자들이 대전경찰서 및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 및 국군 제507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20여 일 내지 30여 일 동안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2. 고문, 가혹행위 등 여부

수사관들이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피해자들에게 잠 안재우기, 구타, 통닭구이,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는지 여부.

2)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은 1983. 12. 23. 사면복권되고, 박해전 등은 형집행정지로 출소 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8. 2. 27. 사면복권되었음.

3. 범죄사실 허위조작 여부

피해자 박해전 등 7명이 ‘아람회’라는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박해전 등 9명이 북한 또는 국외공산계열을 찬양고무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신용 등 3명이 위와 같은 활동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III.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대상으로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허위조작 등을 말하며,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기본법상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사건의 실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와 허위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6. 11. 28. 조사개시를 의결하였고, 2007. 2. 20. 추후 신청 건을 병합, 조사개시 의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

진실화해위는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입수, 검토하고, 피해자, 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청취를 실시하였다.



1. 자료조사

가. 대전지검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총 13권

- 대전경찰서 정보2과의 수사착수 경위 및 수사과정, 피해자들이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공소 및 판결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대전지검 보존 보안부대 및 군검찰 수사, 1심 재판기록 총 266매

- 김난수가 국군 제507보안부대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들이 참고인과 증인 자격으로 군검찰 및 군법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 국군기무사령부 보존 수사결과보고서 총 112매

- 김난수에 대한 국군 제507보안부대의 수사착수 경위 및 수사과정, 불법감금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국가기록원 보존 수용자신분장 및 김난수의 판결문 10권 총 2,084매

- 김난수의 1, 2, 3심 판결문과 수용자신분장에서 고문 흔적 및 후유증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 기타

- 김난수가 제출한 공소장과 구속영장통지서에서 공소사실과 구속영장발부일을 확인하였고, 충남경찰청에서 수사관 20여 명의 인사기록카드를 입수하여 사진, 경력, 포상 여부 등을 검토, 조사에 활용하였다.

2. 진술청취

피해자, 참고인, 조사대상자 등 모두 56명의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가. 피해자 11명³⁾

- 신청인 6명 : 박해전, 정해숙, 김난수, 황보윤식, 김현철, 김창근,
- 유가족 1명 : 박천희(피해자 이재권의 처)
- 미신청 4명 : 김이준, 신용, 박경옥, 최재열

3) 피해자 박진이는 사망하여 진술청취하지 못하였다.

나. 참고인 22명

- 당시 고등학생 15명 : 라○○(대전고등학교 재학), 김충호, 박광규, 오세학, 길동극, 정진태, 이종욱, 유준중, 김해중, 엄정경(이상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재학), 박○○, 오○○, 류○○, 박○○, 박○○(이상 성남여고 재학)
- 피해자의 지인 4명 : 송○○, 전○○, 김민철(이상 김창근의 친구), 남근우(박해전의 후배)
- 대전교도소 교도관 3명 : 황○○, 강○○, 윤○○

다. 당시 수사관 20명(괄호안은 당시 직위)

- 대전시경 정보2계 소속 수사관 10명 : 김○○(정보2계장, 경위), 최○○(순경), 강○○(순경), 전○○(경장), 육○○(순경), 김○○(경장), 이○○(순경), 유○○(순경), 이○○(순경), 김○○(경사)
-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 7명 : 김○○(정보2계장, 경정), 유○○(대공분실장, 경감), 심○○(경위), 전○○(경사), 박○○(경사), 임○○(경사), 유○○(경사)
-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 1명 : 정○○(순경)
- 국군 제507보안부대 소속 수사관 2명 : 민○○, 이○○

라.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3명

- 정○○, 전○○, 이○○

V. 조사 결과

1. 수사 및 재판과정

가. 수사착수의 경위

1981. 7. 12. 대전고등학교 3학년 학생 라○○이 중학교 친구인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3학년 재학중인 최재열의 소개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역사교사 황보윤식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황보윤식, 박해전, 김창근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실을 들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대전고등학교 교련교사 이○○에게 알렸고, 이○○이 대전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나. 대전경찰서의 수사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1981. 7. 중순경 황보윤식 등을 차례로 연행하여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대전경찰서 인근 혜선여관에서 충남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한 후, 1981. 8. 18. 대전지검에 정보사범(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를 하였고, 8. 20. 대전지법으로부터 황보윤식, 정해숙, 박해전,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 김이준, 박진아 등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대전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하고, 9. 7.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

대전지검은 사건 송치 당일에 대전경찰서의 의견서를 토대로 박해전, 정해숙, 황보윤식,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정해숙에 대해 9. 9. 김현철에 대해 9. 23. 김창근·이재권에 대해 9. 24. 황보윤식에 대해 9. 29.에 각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10. 6. 대전지법에 기소(검사 정용식)하였다.

라. 재판과정

1) 대전지방법원

위 기소에 대하여 대전지법은 1981. 10. 26. 제1차 공판을 시작으로 11. 2. 제2차, 11. 9. 제3차, 11. 16. 제4차, 11. 30. 제5차, 12. 7. 제6차, 12. 14. 제7차, 12. 21. 제8차, 12. 28. 제9차, 1982. 1. 7. 제10차, 1. 18. 제11차 공판을 거쳐 2. 11.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법은 박해전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황보윤식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정해숙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창근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이재권, 김현철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김이준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진아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용·박경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최재열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하였다.(재판장 판사 김학세, 판사 황승연, 이인제)

2) 서울고등법원

위 판결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박해전 등 6명과 검사가 각각 서울고법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법은 4차례의 공판을 거쳐 1982. 6. 19. 1심 판결 내용 가운데 박해전 등의 반국가단체구성(국가보안법 제3조제1항제2, 3호)에 대해서는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 개념은

적어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부전복의 목적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자료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전고법은 박해전에게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황보윤식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정해숙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창근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이재권, 김현칠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다.(재판장 판사 이정락, 판사 윤선, 신성철)

3) 대법원

위 판결에 대하여 박해전 등 6명과 검사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82. 9. 28. 박해전 등이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할 준비를 하면서 북괴 주장과 같은 노선에 따라 행동할 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하였다.(재판장 대법원판사 신정철, 대법원판사 김중서 이정우 강우영⁴⁾)

4) 환송심

서울고법은 1983. 2. 16. 반국가단체구성(국가보안법 제3조제1항제2, 3호)을 유죄로 인정하여, 박해전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황보윤식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정해숙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창근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이재권, 김현칠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다.(재판장 판사 이영도, 판사 차광웅, 심일동)

5) 재상고심

위 판결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4명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4. 6. 14.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재판장 대법원판사 김덕주, 대법원판사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마. 김난수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김난수의 경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이

4) 판결문상 “강우영은 당시 해외출장중으로 서명날인 불능”.



별도로 진행되었다.

1) 국군 제507보안부대의 수사과정

국군 제507보안부대는 1981. 8. 2. 김난수를 검거, 신병을 확보하여, 8. 10. 제1회 자술서 작성을 시작으로 8. 24.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8. 26.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의 구속영장 발부, 8. 28.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거쳐 8. 31.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하였다.

2)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수사과정

1981. 9. 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 25.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9. 30.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에 기소하였고(검찰관 이장한), 11. 17.~24. 이재권, 김현철, 정해숙, 박해전을 대상으로 각각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3) 재판과정

군법회의(재판관 김태영, 안종택, 성덕경)는 1981. 12. 1. 제1차 공판, 12. 10. 제2차 공판을 거쳐 1982. 1. 16. 판결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난수는 차례로 항소 및 상고하였다. 고등군법회의(재판관 박윤중, 최달순, 박남규, 강성신, 윤여일)는 1982. 6. 11. 항소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판사 이정우, 대법원판사 김중서, 신정철)은 1982. 10. 12. 상고를 각각 기각하였다.

바. 재심청구

위 판결에 대해 2000. 6.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이재권(사망, 대리인 박천희), 김현철, 김창근, 김난수 등 7명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⁵⁾에 의거 재심개시 청구를 하였다. 2006. 7.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이재권, 김현철의 경우 계엄법위반이 포함되어 동법에 의거 재심개시 결정되었으나(사건번호 2000재노6), 김난수, 김창근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한편, 김난수는 위 재심개시 청구와 별도로 2004. 4. 대전지법에 재심개시 청구를 하여 계류 중이다.

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특별재심) ①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감금 여부

1) 수사기록 검토

가) 대전경찰서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1981. 7. 18. 황보윤식의 집(책), 7. 19. 최재열의 집(수련회 감상문과 관련된 작문노트)과 박해전의 셋방(대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읽어주었던 책), 7. 20. 이재권의 집(‘광주사태의 진상’ 등 유인물), 7. 21. 김민철의 집(김창근의 편지 1매), 7. 25. 김창근의 집(아산만 방조제에서 찍은 사진), 8. 7. 김현철의 집(김대중의 연설이 담긴 녹음테이프)과 송○○의 집(유인물 1매), 8. 12. 박해전의 셋방(카세트라디오)에서 각각 위 물건들을 압수하였다.

대전경찰서 및 충남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1981. 8. 17. 박해전의 자백을 받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18. 제1회, 제2회 진술서, 8. 28.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4회에 걸쳐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황보윤식의 자백을 받아 8. 17. 제1회 진술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3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에 걸쳐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정해숙의 자백을 받아 8. 16. 제1회 진술서, 8. 17.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28. 제2회 진술서, 8. 30.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9. 3. 제3회 진술서 등 총 5회에 걸쳐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김창근의 자백을 받아 8. 2.부터 8. 8.까지 모두 11차례의 진술서, 8. 16.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27.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일자미상일의 제12회 진술서, 9. 3. 제13회 진술서 등 총 15회에 걸쳐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재권의 자백을 받아 7. 20. 제1회 자술서, 7. 31. 제2회 자술서, 8. 15. 제3회 자술서, 8. 16.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25. 제4회 자술서, 8. 3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6회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김현철의 자백을 받아 8. 16.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24. 제1회 진술서, 8. 28.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김이준의 자백을 받아 7. 24. 제1회 참고인 진술조서 및 제1회 진술서, 8. 9. 제2회, 제3회 진술서, 8. 31.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5회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박진아의 자백을 받아 7. 23. 제1회 참고인 진술조서, 8. 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서, 8. 30.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일자미상일의 진술서 등 총 5회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신용의 자백을 받아 8. 10. 제1회 진술서, 8. 12.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박경옥의 자백을 받아 7. 28. 제1회 참고인 진술조서, 8. 5. 제2회 참고인 진술조서, 8. 14.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 2.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4회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최재열의 자백을 받아 7. 20. 제1회 참고인 진술조서, 8. 13. 제1회 진술서, 8. 17.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30.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4회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권은 1981. 7. 20. 11쪽 분량의 자술서에서 1981. 6. 27.의 수통리 야유회를 황보윤식을 중심으로 한 모임체라고 진술하였으며, 7. 31. 18쪽 분량의 자술서에서는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박해전이 항일투사 김일성 장군을 위해 건배하고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 말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한 사실 및 1981. 5. 17.에 친목계 아람회를 구성한 것 등에 대해 진술하였고,

김창근은 1981. 8. 2.부터 8. 10.까지 1쪽에서 6쪽 분량의 자술서를 10여 회 작성하였으며,

1981. 8. 16.에 김창근은 66쪽 분량, 이재권은 47쪽 분량, 김현철은 51쪽 분량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8. 17. 박해전은 115쪽 분량, 황보윤식은 153쪽 분량, 정해숙은 64쪽 분량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각각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서로 만났던 일시 및 장소, 대화내용, 북한찬양 발언, 아람회 구성 등 범죄사실 대부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자백하였다.

이외 박경옥은 1981. 7. 28. 진술조서에서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였으며, 8. 5, 8. 14.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6. 27. 수통리에서 황보윤식, 박해전의 북한 찬양고무를 목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신용은 1981. 8. 10. 6쪽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였고, 8. 12.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자백하였다.

1981. 7. 17.부터는 제보자 라○○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전공업고등학교 학생, 수통리 수련회 참석자, 피해자 김창근과 김현철의 금산고등학교 동창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7. 17. 라○○의 제1회 진술서, 7. 20. 제1회 참고인 진술조서, 7. 21. 전○○의 제1, 2, 3회 진술서, 7. 21. 송○○의 제1, 2, 3회 진술서, 7. 22. 제4회 진술서, 7. 23. 참고인 진술조서, 7. 23. 강○○의 참고인진술조서, 7. 24. 김○○의 제1회 진술서, 7. 27. 제2회 진술서 및 제1회 참고인진술조서, 7. 29. 제3회 진술서, 7. 27. 이○○의 제1회 참고인진술조서, 8. 29. 제1, 2, 3, 4회 진술서, 8. 2. 박○○의 제1회 참고인진술조서, 8. 20. 제2회 참고인진술조서, 8. 29. 제1회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그 밖에 다수의 참고인들에 대해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수사기록상 대전지법에서 발부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 김이준, 박진아 등 8명의 구속영장 집행일은 1981. 8. 20.이고, 김난수의 구속영장 집행일은 8. 26.이다. 사건 관련자 중 신용, 박경옥, 최재열의 경우 불구속 수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나) 국군 제507 보안부대

국군 제507보안부대가 보안사령부로 보낸 「김난수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1981. 8. 20)에는 “1981. 8. 2. 김난수를 연행, 신병확보 후 현재 수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난수의 구속영장 통지서에는 구속영장 발부일이 1981. 8. 26.로, 수용자 신분장에는 구속영장 집행일이 1981. 8. 27.로 기록되어 있다.

2)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

가) 피해자 진술

이재권은 1981. 9. 27. 교도소에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교도소에 오기 전 50일 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창근은 1981. 11. 9. 대전지법 제3차 공판에서 7. 18.에 연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박해전은 1981. 11. 16. 대전지법 제4차 공판에서 7. 19. 충남도경 대공분실의 사방이 현 지하조사실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8. 18.이나 8. 19.에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공판에서 정해숙은 1981. 7. 23. 지하조사실로 연행되어 30여 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 등 5명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1981. 12. 10.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 제2차 공판에서도 경찰에서 장기간 구금된 상태로 조



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982. 5. 6. 서울고법 제1차 공판에서 황보운식은 1981. 7. 18. 학교에서 연행되어 지하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재권은 1981. 7. 19.에 연행되어 처음에는 여관으로 갔다가 곧바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지하조사실로 끌려갔으며, 한 달 동안 집에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김현철은 1981. 7. 23. 금산지청에서 지하조사실로 연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982. 6. 3. 서울고법 제3차 공판에서 최재열은 1981. 7. 19.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여관에 서 11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1982. 6. 3. 서울고법 제3차 공판에서 참고인 송○○는 “1981. 7. 19.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여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밤에 경찰서로 이동, 그 곳에서 8일 동안 조사받았고, 경찰서 내부 사무실에 있다가 밤에는 책상 위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공판에서 참고인 박광규는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여관에서 9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진술

가) 피해자 진술

박해전은 “1981. 7. 19. 대전경찰서 소속 김○○ 경사 등에게 연행되어 눈을 가리운 채 지하조사실에 감금되어 8. 20.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2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 접견이나 가족들의 면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황보운식은 “1981. 7. 16. 학교에서 어딘지 모르는 곳의 지하로 붙잡혀 가서 30여 일간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법정에서는 당시 기억에 따라 7. 18.에 연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출소 이후 처에게 확인하여 연행일이 7. 16.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정해숙은 “1981. 7. 23. 금산을 다방에서 연행되어 보문산 인근의 대공분실 조사실에서 30여 일 구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김창근은 “천안경찰서 남부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1981. 7. 18. 위 파출소에서 천안경찰서 경찰관에게 연행된 뒤 충남도경 사무실을 거쳐 대공분실로 옮겨져 30여 일간 조사”받았으며, “연행되고 며칠 지나서 천안경찰서 경무과 직원이 찾아와서 사직서를 받아갔다”고 진술하였고,⁶⁾

김현철은 “대전지검 금산지청에 근무중이던 1981. 7. 22. 상급자의 지시로 사직서를 쓴 다음 금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그 이튿날 7. 23. 대공분실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⁷⁾

신용은 “1981. 7.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 경찰관 2명에게 연행되어 8. 14. 풀려날 때까지 대공분실 지하조사실에서 20여 일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박경옥은 “1981. 7. 여름방학 전에 황보윤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때에 경찰관 2명에게 연행되어 지하조사실에서 3~4일간 조사를 받은 이후 여관으로 옮겨 약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최재열은 “1981. 7.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혜선여관 2층에서 11일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관들이 황보윤식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황보윤식 등이 작성한 자료를 갖고 와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난수는 “1981. 7. 말경 집에서 보안부대 수사관에게 연행되어 제507보안부대(간판은 충남기업사) 지하실에서 장기간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참고인 송○○는 “1981. 여름 여관을 거쳐 그날 경찰서로 연행되어 일주일 넘게 구금되어 조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박광규는 “1981. 7. 대전경찰서 근처에 있는 혜선여관에서 7일에서 9일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최재열이 자신보다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김충호는 “경찰관과 함께 여관으로 가서 일주일 가량 구금되어 조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관 진술

당시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대전경찰서 정보2계장 김○○ 경위는 “아람회 사건 피의자들을 충남도경 대공분실에 상당기간 구금시켜 놓고 조사했는데, 그 이유는 영장을 청구하기 전이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며, 영장청구 이후 유치장에 수감시켰고, 치안본부에 공작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받았고, 대전지검 검사에게도 보고하여 처음

6) 천안경찰서 김창근 경력증명서 1981. 7. 21. 파면.

7) 김현철 경력증명서 1981. 7. 23. 사직.



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 “피의자 집에 대한 압수는 피의자에 대한 연행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집행하였고, 연행한 피의자들을 귀가조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전○○ 경장은 “대공분실에서 초기에 일주일 정도 조사한 다음 나와서 이전에 하던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시 대공분실로 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공분실에서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으나 당시에는 공안사건의 경우 영장을 받기 전에 연행하여 일정기간 조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육○○ 순경은 “7월 중순이었고 대공분실에서 20여 일 상주하면서 조사했다”고 진술하였고,

김○○ 경장은 압수조서상 1981. 7. 19. 박해전의 자취방에서 노트를 압수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상식에 비추어 증거물을 압수하기 전에 피의자 연행이 먼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이○○ 순경은 “처음에는 두 세 명의 학생들이 조사를 받고 있던 혜선여관에서 2~3일 동안 최재열을 조사했고, 이후 대공분실에 상주하면서 열흘 남짓 수사보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 순경은 “대전서 정보2계 사무실에서 송○○를 조사할 때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하러 대공분실에 갔기 때문에 사무실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오랫동안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했고, 초기에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순경은 “당시 사무실과 대공분실을 오가면서 한 달 이상 서무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김○○ 경사는 대공분실에서 피의자들을 조사하던 시점에 “혜선여관에서 구금상태에 있던 박경옥을 열흘 정도 조사했다”, “당시 혜선여관 전체를 빌렸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충남도경 정보2과 정보2계장 김○○는 “당시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2주 정도 대공분실에서 피의자들을 구금시켜 놓고 조사했다”고 진술하였고,

충남도경 대공분실 전○○ 경사는 김창근의 최초 진술서가 1981. 8. 2.에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도주 우려 때문에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연행한 후 귀가조치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최소한 그날부터는 김창근이 대공분실에 유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유○○ 경사는 “대전경찰서 직원들이 분실에 여러 날 동안 상주하면서 아람회 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507보안부대 민○○ 상사는 위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1981. 7. 31. 대공전을 통해 김난수 체포 허가를 구한 다음 8. 2.에 체포, 조사하였으며, 김난수를 수사하기 전에 대전경찰서에서 관련자들의 자술서가 상당량 넘어왔던 것으로 기억되며, 그에 바탕하여 범죄 요지를 뽑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소결

불법감금에 대해서는 1심 법정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상당기간 영장 없이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수사관들의 진술, 제507보안부대 수사결과보고서의 김난수 연행일자 기재사실, 수사기록상의 압수일자 및 조서작성일자 이전부터 조사를 하였을 것이라는 수사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황보운식은 1981. 7. 16.경에, 이재권은 1981. 7. 17.에, 김창근은 1981. 7. 18.에, 박해전은 1981. 7. 19.에, 정해숙, 김현철은 7. 23.에 각각 연행되어 8. 20.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각 34여 일, 33여 일, 32여 일, 31여 일, 27여 일, 27여 일 동안, 그리고 김난수는 8. 2.에 연행되어 8. 26.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4여 일 동안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⁸⁾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고문, 가혹행위 여부

1) 법원에서의 진술

1981. 11. 2. 대전지법 제2차 공판에서 김창근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데 이어, 11. 9. 제3차 공판에서는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시인한다’며 ‘왜 부인하느냐’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무릎 밑에 곤봉을 넣고 얼굴에 수건을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으며 이런 고문을 밤 10시경에 2번 정도 당했다”고 고문행위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1981. 11. 16. 대전지법 제4차 공판에서 박해전은 “대공분실에서 수사관이 머리를 거꾸

8)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로 하여 수건으로 코를 막고 물을 다섯 번 가랑 붓는 물고문을 하였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으며 유서를 쓰라고 협박하였고, 대공분실에서 황보윤식과 정해숙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 넘어온 뒤 수사관들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였고, 목록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연습을 시킨 후 진술내용을 녹음하였다”,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공판에서 정해숙은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이 ‘함석헌, 장준하, 김대중은 용공분자라고 하며 자신도 그 사람들과 가까이 했으니 마찬가지로’라고 말하며 물고문, 구타 등을 하였다”, “수사관이 검찰로 넘어올 때 말이 다르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였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담당수사관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981. 4. 29.과 30.경 서울고법에 제출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 등 6명의 각 항소이유서에는 대공분실에 30여 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폭행,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사건이 조작되었고, 검찰에서 검사가 조사하는 동안 수사관이 입회하였다가 진술을 부인하면 검사가 자리를 뜬 사이에 협박하여 허위로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82. 5. 6. 서울고법 제1차 공판에서 황보윤식은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못 이겨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시인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대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뒤 지하조사실에서 꾸며진 결과를 암기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검찰에서 고문한 수사관이 검사실에서 입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공판에서 김창근은 “1981. 8. 18. 밤 11시경 대공분실에서 대전경찰서로 넘겨져 그곳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신문을 예상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놓고 녹음기까지 틀어놓고 반복하여 연습시켰다”, “검찰에서 조사할 때 경찰관들이 입회하였다가 자신이 부인하면 검사가 자리를 뜬 사이에 협박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재권 역시 “수사관들이 몽둥이로 때리다가 비명을 지르면 입을 틀어막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다른 사람의 자술서를 가져와서 시인하라고 하였고, 1981. 8. 20. 정식으로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로는 검찰이나 법정에서의 신문에 대한 대답을 녹음까지 해가면서 연습시켰고, 고문을 당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현철도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고문을 가해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이 입회하여 자신이 사실을 부인하면 검사가 자리를 떠

나고 그 사이에 수사관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81. 12. 10.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 제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이재권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옆에 있어서 불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진술

가) 피해자 진술

박해전은 김○○ 경위, 김○○ 경장과 진행한 각 대질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누구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너는 얘기하지 않느냐’며 고문과 허위진술 강요를 반복하였고, 조사 초기에는 이재권의 자술서를 바탕으로 압박하였고, 김○○이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푸레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고, 다른 수사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4차례의 물고문을 받았고, 김○○ 경위가 수사관 7~8명과 함께 들어와 자신을 벽으로 몰아붙이고 양쪽 턱을 손가락으로 세게 잡아 누르며 이적단체구성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그 후 다른 수사관들이 합세하여 온몸을 사정없이 손과 발로 때렸고, 검찰 송치일에 검사실에서 김○○, 김○○ 등 수사관들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황보윤식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의 진술내용을 요약한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진술했으니 너도 사실대로 시인하라’고 하고 부인하면 몽둥이 등으로 무수히 구타했고, 머리채를 잡고 ‘너 뭐뉘 했잖아’하며 욕조물에 처박았고,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을 세 번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정해숙은 “수사관이 ‘아람회’라고 적혀 있는 체계도를 보여주며 자신이 수괴, 황보윤식이 부책, 박해전이 행동책, 이재권은 재정책 등 아니냐며 추궁하여 부인하자, 무릎을 꿇게 하고는 오금에 몽둥이를 끼워서 양발로 올라타서 다리를 압박하였고, 이외 여러 차례의 폭행과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고, 대공분실에서 박해전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김창근은 “몽둥이 등으로 10여 차례 구타를 당할 때 양쪽 귀 부위를 심하게 맞아 특히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증상이 생겨 현재 왼쪽 귀의 청력이 40% 정도 상실되는 등 치유되지 않았고, 이외 통닭구이 물고문 두 차례, 오금에 몽둥이를 넣고 발로 누르는 고문 등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김현철은 최○○ 순경, 전○○ 경장, 김○○ 경장, 박○○ 경사와 각각 진행한 대질조사



에서 “전○○, 김○○, 박○○ 등이 손과 몽둥이로 3~4회 집단폭행하였고, 담당수사관 최○○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누구는 뭐했다고 하는데 왜 너는 얘기 안 했냐며 술하게 몽둥이나 손으로 엉덩이와 얼굴을 때렸고, 전○○과 박○○ 등으로부터 통닭구이 물고문을 수 회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난수는 “경찰에서 수사기록이 새로 올 때마다 민○○, 이○○ 상사에게 맞았으며 총 10여 차례 한번에 20여 대씩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김이준은 “대전경찰서 유치장에서 박해전을 보았을 때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 있는 등 고문을 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흔적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신용은 “조사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조사를 받았고, 질문에 대해 부인하였다가 따귀를 4~5대 맞은 적이 있고, 다른 조사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공포심을 느껴 결국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박경옥은 “대공분실에서 황보윤식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허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쌍소리를 하는 수사관이 들어와서 ‘죽어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수통리 수련회에서 ‘아침은 빛나라 동방의 타오르는 별’ 등 전혀 모르는 북한 노래를 들었다고 하는 등 수사관의 요구대로 허위 자술서를 썼다”고 진술하였고,

최재열은 “여관에서 조사방향은 황보윤식 등을 간첩 비슷한 사람들로 몰아세우는 것이었고, 질문에 대해 부인하자 머리를 때리거나 ‘이 자식 혼나봐야 되겠구만’하더니 물이 들어차 있던 욕조로 들어가게 한 뒤 손들고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결국 수사관들이 가져오는 다른 사람들의 조사내용에 맞게끔 허위 자술서를 썼고, 경찰에서 풀려난 뒤에도 담당형사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디 가려면 연락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고, 집안의 뒷조사까지 하여 심하게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도 황보윤식 선생님이 용공발언을 했다는 것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정하였으며, 1심 재판을 받는 날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법정에서 함께 갔는데 ‘잘못 얘기하면 재판이 길어지고 또 들어와야 한다’고 부담을 주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박해전의 후배 남근우(당시 숭실대학교 학생)는 “1차 공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며, 증언이 끝나고 유치장에서 하루 또는 이틀 밤을 지내고 각서나 반성문 같은 것을 쓰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의 제보자 라○○(당시 대전고등학교 학생)은 “며칠 동안 여관에 출퇴근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진술에 대해 경찰관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고갔으며, 당시 다른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등 전체적으로 험악한 분위기에서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어서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내가 진술하거나 서명한 내용 가운데는 사실에 기초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일부는 과장되거나 말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변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학생이었던 김충호는 “여관에서 일주일 정도 구금되어 조사받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경찰관이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너만 모른다고 하냐’면서 따귀를 서너 대 때리거나 ‘너 감옥에 가서 살고 싶냐’고 하여 결국 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칫하면 자꾸 불러 다니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경찰에서 인정한 내용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교생이었던 박광규는 “여관에서 7~9일 가량 구금되어 조사받을 때 황보윤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다가 경찰관에게 따귀를 3~4대 맞은 적이 있고, 잠을 자지 못한 채 갇혀 있는 것이 힘들어서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여관방을 나가 본 일이 없어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폐소공포증을 느낀다”, “대전지검에서도 경찰관이 ‘나중에 부인하면 다시 잡아 조사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으며, 김충호와 함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했는데 둘 다 두려움에 떨었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교생이었던 정진태는 “대전경찰서에서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가 경찰관이 혼을 내면서 얼굴을 때려 소리가 크게 나서 긴장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교생이었던 김해중은 대전경찰서에서 “얼굴을 한 두 대 맞은 적이 있고 ‘선생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수사관이 ‘어린놈이 안되겠다. 다른 학생들은 다 기억난다고 했는데 왜 너만 기억이 안 나냐’고 하여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교생이었던 염정경은 “경찰관이 다른 친구들의 자술서를 보면서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너만 기억하지 못하냐’며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교생이었던 오세학은 “대전경찰서에서 친구들 여럿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옆드려뻥쳐를 시켰고, 친구 정진태가 대답을 잘못하여 뺨을 세계 맞았기 때문에 당



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자신들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고, 경찰관이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을 때 ‘나중에 진술조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경찰에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겁을 먹었고,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교생이었던 유준종은 “검찰에서 조사할 때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그대로 진술서를 쓰게 했는데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교생이었던 이종옥은 “여관에서 조사받을 때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긴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관 진술

당시 수사관들은 대체로 피해자들의 가혹행위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전○○ 경장은 “김현철에게 물고문을 가한 사실이 있으며, 물고문은 조사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했는데, 오○○ 반장이 물주전자를 가져와 물고문을 주도하였고, 당시 여름이어서 조사실 문을 열어두었기에 다른 조사실에서 나오는 비명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최○○ 순경은 “자술서를 받다가 열이 나면 ‘다른 사람은 다 쓰는데 왜 너만 안 쓰냐’면서 여러 차례 귀싸대기를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나 나에게 맞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형태나 정도 모두 인정되지만, 물고문에 관해서는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수사관들이 물고문을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전○○ 경사는 “가혹행위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은 없으나, 특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다가 며칠 되지 않아 그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본 적이 있다며, 그래서 그 사이에 강압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하였고,

육○○ 순경은 “수사관들이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으박지르는 소리는 들었지만 피의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순경은 “가혹행위에 관해 아는 사실이 없으나, 대공분실에서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 가혹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진술을 얻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대공분실 주임 심○○ 경위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 피의자들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위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공분실 지하조사실 복도에 서 피의자가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은 일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김○○ 경장은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박해전을 검찰에 송치할 때 김○○ 계장,

오○○ 반장, 이○○ 순경과 함께 갔으며, 당시 조사가 끝난 새벽 4~5시까지 수사관들은 검사실 한쪽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소결

피해자들은 충남경찰국 대공분실(지하조사실)에서 구타, 물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허위 자백하였다고 대전지법 공판기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참고인들까지도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고문 상황이 비교적 유사하고 상세하며, 일부 수사관들도 가혹행위를 한 일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일부 수사관들은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피해자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충남경찰국 대공분실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백을 하였고, 대전지검에서도 수사관들이 협박하거나 입회하여 강압적 상황에서 조사를 하여 자백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가. 증거관계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점, 불고지하였다는 점 등이다.

아래 각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일부 자백이 있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경위는 “당시에 ‘이런 정도를 갖고 이적단체죄를 적용하나’하고 아람회 사건 수사가 무리하고 확대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 경장은 “자신이 담당했던 이재권을 조사한 결과, 이재권이 아람회 관련자들로부터 정부전복에 대한 생각을 전해 듣거나 알고 있는 것은 없었고, 아람회는 국가변란이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가 아니었고 친목회였다”며 “아람회 관련자들은 함석헌의 『씨알의 소리』를 읽고 그 영향을 받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술자리 등에서 표출한 것”이며



“이재권을 조사한 서류를 보고할 때 메모지에 이 사건은 친목회 모임에서 정부를 비방하거나 불온한 발언을 한 사건, 즉 반공법위반 사건이라는 의견을 적어서 올렸으며, 또한 수사지휘부에서도 아람회가 이적단체가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아람회 관련자들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추진했다고 보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실체를 왜곡, 과장한 수사였다”고 진술하였고,

육○○ 순경은 “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김일성 노래를 부른 정도인데, 여기에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무부, 청와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경찰서에 격려전화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 “매일 석회를 하면서 김○○ 계장, 김○○ 계장 등이 자술서나 조서에 대해 읽어보면서 이런저런 점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며 이렇게 저렇게 보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 경사는 “언젠가 회의에서 김○○ 경정이 내가 받은 박경옥의 진술조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심도 깊게 조사를 하여 범죄사실을 밝혀내는데 왜 당신만 진척이 없냐’며 나무란 적이 있다. 그래서 박경옥이 얘기한 내용 그대로이고 더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전○○ 경사는 “주로 박해전의 자술서를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김○○ 경장은 “박해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안기부 조정관이 보고는 학생들의 자술서와 비교해 볼 때 범죄사실을 빠뜨렸다며 조서를 다시 받으라고 해서 조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507보안부대 민○○ 상사는 “아람회는 동창모임으로서 참여자 가운데 불온한 사상을 갖고 불온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강령과 규약이 없었고 불온사상을 학습한 문건이나 학습내용을 기재한 노트 등도 발견하지 못했고, 피의자들의 진술서 외에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고, 현장채증을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람회 모임을 이적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판기록상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술을 종합하여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토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 1) 박해전 범죄사실 14항, 황보윤식 7항, 정해숙 10항, 김창근 6항, 이재권 9항, 김현철 7항, 김난수의 군법회의 판결 범죄사실 5항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 김난수 등이 회합을 거듭하여 오던 중 상호 감화되어 황보윤식, 정해숙의 지도 아래 박해전의 통솔로 결속한 바, 1981. 5. 17. 김난수의 집에서 동인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 끝에 직장 사정으로 먼저 돌아가는 김창근, 김현철로 하여금 단체결성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고,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이재권, 김난수가 따로 회합하여 민중의식화 운동을 통한 민중봉기 유도로 현 정권과 미국 등 외세를 타도 축출함으로써 북한 괴뢰집단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에 따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하고, 모임의 통솔체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황보윤식, 정해숙의 지도를 받아 박해전이 통솔키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회원은 우선 위 김창근, 김현철을 포함한 7명으로 하되 하계방학을 이용, 그간의 각자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조직의 결속강화를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모임의 경비조달을 위해 1인당 쌀 1말 값을 매월 회비로 징수하여 동 김난수가 그 경비를 담당키로 합의 결정하는 한편, 모임의 명칭을 ‘아람회’로 결정하여 위 목적과 통솔 등에 따라 활동지도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구성하여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대전지법 판결은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 등 6명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하였으나, 군법회의 판결은 김난수에게 동법 제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평소 친목모임을 하자고 하던 박해전이 당시 김창근 등 몇몇이 있는 자리에서 친목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주변이 어수선하여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친목계의 명칭에 대해 ‘아람’이라는 이름이 좋다면 ‘아람회’ 등이 거론되었으며, 김난수의 대학원 수료와 황보윤식의 대만유학으로 자주 보지 못할 것이므로 여름방학에 쌀 1말 값을 거둬 무주구천동이나 소백산맥 등으로 캠핑을 가자고 하면서 회비를 김난수에게 주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직구성 등 나머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박해전 범죄사실 1항, 정해숙 2항, 김창근 1항, 이재권 2항, 김난수의 군법회의 범죄사실 1항

판결은 1980. 11. 초순 털보식당에서 박해전,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난수가 대화하던 중, 박해전이 당시 그곳은 비상계엄지역 내로 1980. 5. 17.자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0호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국가원수 모독 및 비방 혐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



5. 광주사태에 관하여 현 대통령을 지칭,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모독 비방하면서 “앞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결정적 시기가 오면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 정부를 수립하는 데 투쟁할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다음, 김일성은 항일투사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하고 나서 ‘항일투사 김일성 장군을 위해 건배합시다’고 일동에게 건배를 제의하는 등으로 위 포고령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그들의 민중봉기 현 정권 타도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3명에게 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 박해전에게 동법 제4조 찬양고무죄 및 포고령 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해전이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난수에게 자신의 졸업논문 주제인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일성이라는 항일투사가 있다면서 정해숙에게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 묻자, 정해숙이 김일성이 가짜가 아니고 항일투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인재를 양성, 결정적 시기가 오면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할 각오를 하자”는 발언과 항일투사 김일성 장군을 위해 건배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박해전 범죄사실 2항, 정해숙 3항, 이재권 3항, 김현철 3항

판결은 1980. 11. 중순 정해숙의 집에서 박해전, 정해숙, 이재권, 김현철이 대화하던 중 박해전이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며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김일성 장군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역설한 다음, “김일성 장군을 위해 건배합시다”라고 제의하며 동인들과 함께 김일성을 위한 건배를 함으로써 김일성 등을 찬양고무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6·25 북침설을 조작 선전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정해숙, 이재권, 김현철 등 4명에게 반공법 제4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980. 11. 중순 정해숙의 집에서 박해전이 신문에서 보았다면서 “미국에 있는 반한 인사가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정해숙이 6·25 당시의 체험을 말해주며 남침이 확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박해전 등이 김일성 건배를 하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반미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박해전 범죄사실 3항, 정해숙 4항, 이재권 4항, 김현철 4항

판결은 1980. 12. 중순 정해숙의 집에서 정해숙, 박해전, 이재권, 김현철이 대화하던 중 정해숙이 “6·25 당시 빨치산 사령관 이현상은 자기 신념을 위해 몸을 바친 금산이 낳은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하여 북한 괴뢰집단의 구성원인 동 이현상의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해숙에게 반공법 제4조 찬양고무죄를, 박해전, 이재권, 김현철 3명에게 동법 제8조 불고지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금산의 유명한 사람을 거명할 때 유진산, 임영신, 이현상을 거론하면서 이현상이 빨치산 사령관으로 잔인한 짓을 많이 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박해전 범죄사실 4항, 정해숙 5항, 김창근 2항, 이재권 5항, 김현철 5항, 김난수의 군법회의 범죄사실 2항

판결은 1980. 12. 말 정해숙의 집에서 정해숙, 박해전,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 김난수 6명이 망년회를 하던 중 박해전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없지만, 민주주의는 서울부자 놈들이 농민의 피를 빨아 먹어 빈부의 차가 많다”,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면 공산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이제 가방을 놓고 광화문 네거리에 나가 낫을 들고 매국노들의 목을 베겠다. 조국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 독립군을 편성해서 현 정권을 뒤엎어야 한다”, “김일성은 항일투사이며 위대한 지도자다”, “김일성 장군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합리적이다. 우리도 이 뜻을 따르려면 혁명적인 각오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김일성 장군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여 동인들과 함께 건배함으로써 북한 괴뢰집단 및 그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고무함과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노선과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철, 김난수 등 6명에게 반공법 제4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위 6명이 망년회를 하면서 박해전의 졸업논문, 대학진학 및 취직, 결혼 문제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국내외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이란의 인질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지적한 일이 있고, 정해숙이 “이란 호메니옹은 진정한 민족주의자이다”, “우리도 이란처럼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광주사태의 진상』이라는 유인물의 내용이 신빙성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 역사상 없을 민족적 비극이라고 탄식하면서 살인마 전두환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할 때 김난수 등이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한 것으로 보이나, 박해전이 김일성 견배를 하였거나 공산주의를 찬양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6) 박해전 범죄사실 5항, 박진아 1항

판결은 1980. 12. 말 박진아의 집에서 박해전, 김이준, 강형철 등 4명이 대화하던 중, 박진아가 그 남편 김이준과 박해준, 강형철에게 북괴 애국가 가사가 인상적이고 좋다면서 그 가사를 1회 낭독하고 1회 가창하는 등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여 그를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를, 박진아에게 동법 제4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진아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김이준이 제지하였고, 박진아는 적 치하시 들어서 ‘은금에 자원까지’만 가사를 기억하고 있고 노래 전체는 모른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따라서 위 노래가 인상적이며 좋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1회 낭독 및 가창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7) 박해전 범죄사실 6항, 정해숙 6항

판결은 1981. 1. 초순 일자미상 10:00경 서울 동작구 흑석1동 42 박해전의 자취방에서 박해전이 정해숙에게 북한 방송을 틀어주면서 북한 가요 ‘조선의 별’과 “아침의 햇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로 시작하는 일명 ‘조선의 노래’(이하 단순히 ‘조선의 노래’라 한다)가 흘러나오자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동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하고,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정해숙에게 동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해숙이 박해전의 자취방에 간 일은 있으나, 북한방송을 청취하거나 노래를 불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박해전 범죄사실 7항, 정해숙 7항, 김창근 3항, 이재권 6항

판결은 1981. 1. 정해숙의 집에서 박해전, 김창근, 이재권 등이 만나 대화하던 중 정해숙이 “정권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 기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다. 소수는 잘 살고 다수는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박해전이 동인들에게 “김일성은 제3세계의 지도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의 원수 놈들을 빨리 몰아내고 통일민족국가를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위대한 김일성 장군을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하여 김일성을 위한 건배를 한 다음 계속하여 북한 가요 ‘조선의 노래’를 선창하고 동인들과 함께 부르는 등으로 북한 괴뢰집단 및 그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그들의 대남전략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4명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정해숙이 미국이 정권교체된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도 평화적으로 웃으며 여유있게 정권교체가 되면 얼마나 좋으며, 우리의 경제현실이 빈부차가 심하고 물가가 예측을 못하니 살아가는 일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박해전이 “김일성은 제3세계의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발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9) 박해전 범죄사실 8항, 황보윤식 2항, 김창근 4항, 이재권 7항, 김난수의 군법회의 범죄사실 3항

판결은 1981. 1. 황보윤식의 집에서 황보윤식, 박해전, 김창근, 이재권, 김난수가 만나 대화하던 중 박해전이 “중공을 통한 북한의 진출이 두드러진다”고 한 다음 현 대통령을 지칭하여 “광주사태로 죽은 훈령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7년 임기가 지나기 전에 피의 값을 치를 것이다”고 역설함으로써 북한 괴뢰집단의 외교활동을 찬양하고 대남비방선전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황보윤식, 김창근, 이재권 3명에게 동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해전은 “중공, 북한은 비동맹국가와 외교가 활발하니 우리도 미국 등 강대국과만 외교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제3세계와의 외교를 강화하여야 할 것 같고, 서울대생의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에 ‘광주사태로 죽은 훈령에게 바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박해전 범죄사실 9항, 황보윤식 3항

판결은 1981. 2. 대전역 승강장에서 박해전, 황보윤식이 만나 대화하던 중 박해전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가 민족을 통일하는 데 합리적 방안이다”, “무산자와 유산자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북한 괴뢰집단이 추구하는 소위 평화통일노선과 공산주의노선을 찬양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황보윤식에게 동법 제10조 불고지죄를 각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 민족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황보윤식과 박해전이 고려연방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북한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11) 박해전 범죄사실 10항, 김창근 5항

판결은 1981. 4. 금산읍 상리 ‘비비리’⁹⁾ 고개에서 박해전이 김창근과 산책하던 중 북괴 애국가와 북괴 가요 ‘조선의 별’을 2~3회 반복하여 부르는 등으로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김창근에게 동법 제10조 불고지죄를 각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창근과 박해전이 위 날짜에 ‘비비미’ 고개에 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12) 박해전 범죄사실 11항, 황보윤식 4항

판결은 1981. 5. 초순 황보윤식의 집에서 박해전이 황보윤식에게 “독립투쟁의 전통은 북한에 있다”고 역설한 다음, 북괴 가요 ‘조선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황보윤식에게 동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광복군은 우리나라로 왔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북한으로 간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독립투쟁의 전통은 북

9) 판결문에는 ‘비비리’로 적혀 있으나, 이는 비비미의 諺記로 보인다.

한에 있다”는 발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박해전 범죄사실 12항, 정해숙 8항, 김이준 1항, 박진아 2항

판결은 1981. 5. 중순 박진아의 집에서 박해전, 김이준, 정해숙, 박현진, 이상강, 남근우 등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박해전이 북괴 가요 ‘조선의 노래’를 부르고, 김이준이 ‘빨치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은 다음, 박진아가 북괴 애국가 가사가 인상적이고 좋다면서 이를 2회 연창하자 정해숙, 김이준 등이 함께 장단을 맞추면서 따라 부르는 등으로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정해숙, 김이준, 박진아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해전, 정해숙, 김이준 등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김이준이 애국가에 쓰인 가사 ‘마르고 닳도록’ 부분이 좋지 않은데 아는 노래가 애국가 밖에 없다고 말하였고, 박진아가 술에 취한 채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김이준이 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박해전 등이 김이준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김이준이 월남 전 북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알게 된 빨치산의 노래 중 “태백산에 눈 내린다”라는 구절만 안다며 읊조린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14) 박해전 범죄사실 13항, 황보윤식 5항, 정해숙 9항, 이재권 8항, 김현칠 6항

판결은 1981. 5. 16. 이재권의 집에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현칠 등이 만나 대화 중 황보윤식이 “월남은 망했어도 통일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루 빨리 통일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한다”, “전두환이 미국을 다녀왔지만 실은 정치적 식민지로 당하고만 온 것이다”라고 역설함에 정해숙, 이재권, 김현칠과 함께 ‘옳다’고 찬성하고, 박해전은 이재권이 제시한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 등 불온유인물을 열람하고 나서 “자본주의는 망하고 공산주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잘살 날이 온다. 원수 놈들은 빨리 망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황보윤식, 정해숙, 이재권, 김현칠 등이 동조하자 다시 “항일투사 김일성 장군 건배”를 제의하여 황보윤식, 정해숙, 이재권 등과 함께 건배하는 등으로 북한 괴뢰집단 및 그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그들의 소위 평화통일노선과 공산주의 노선 및 대남비방선전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이재권, 김현칠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권이 제시한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 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열람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박해전 범죄사실 15항(1), 김창근 7항(1), 이재권 10항(1)

판결은 반국가단체인 위 아람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1981. 5. 하순 일자미상 15:00경 이재권의 집에서 아람회 구성원인 박해전, 김창근 등이 만나 대화하던 중 박해전이 이재권과 함께 김창근에게 위 아람회 결성시 결정된 내용을 통고하여 김창근의 동의를 받고, 이재권이 회비로 장사를 해서 놀러나 가자고 하자 “우리가 친목계를 하는 것이나 그때그때 필요함에 써야지 장사로 회비를 증식하면 먼 훗날 사학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할 것이냐”고 답하는 등으로 회비 관리 문제를 상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김창근, 이재권에게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람회 회비와 관련한 상의는 없었고, 박해전이 장사를 해보겠다는 이재권에게 대학진학을 권하고, 황보윤식의 유학과 김난수의 졸업 등의 사유로 헤어지게 되니 강변으로 한번 놀러 가자고 말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16) 박해전 범죄사실 15항(2), 김창근 7항(2)

판결은 1981. 6. 초순 일자미상 16:00경 박해전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0의 3 자신의 자취방에서 김창근을 만나 대화하던 중 김창근에게 북괴 가요 ‘조선의 별’이 흘러나오는 북괴 방송을 듣게 한 다음 “북괴의 문화예술은 오염되지 않아 순수하며 자본주의 때가 들지 않아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문화예술활동을 찬양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김창근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및 동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해전의 생활이 어려워 김창근이 월급을 모아 박해전에게 주려고 그 자취방에 갔던 것이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수들이 외국가요를 번역한 퇴폐적인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17) 박해전 범죄사실 15항(3), 황보윤식 8항(1), 김창근 7항(3)

판결은 1981. 6. 7. 14:00경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서 박해전, 김창근, 황보윤식이 만나 의식화교육을 위하여 야유회 명목으로 데리고 간 송○○, 전○○, 최○○ 등 학생들과 거

닐면서 박해전이 북괴 가요 ‘조선의 별’을 선창하자 김창근, 황보윤식이 함께 합창한 다음, 박해전이 “김일성 장군의 통일노선을 지지한다”고 하자 황보윤식이 “나도 지지한다”하고, 김창근이 송○○ 등에게 ‘여성동무’라고 북괴의 상투용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인 구성원과 회합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함과 동시에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및 동법 제8조(회합·통신 등)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운동권 노래인 정의가, 정의파가 등을 부른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점은 인정되지 않고, 김창근이 “전씨가 동남아 순방을 가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가 되어 바빠진다”고 말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황보윤식이 자연농원에 다니는 최○○에게 삼성 이병철이 자연농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18) 박해전 범죄사실 15항(4), 황보윤식 8항(2), 정해숙 11항(1), 김창근 7항(4)

판결은 1981. 6. 13. 17: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상성에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김난수 등이 만나 대화하던 중 황보윤식이 대전공업고등학교 교사 2명과 등대¹⁰⁾ 회원 7명과 야유회를 갈 계획이라고 하자 박해전이 아람회 회원 전원도 참가하여 수련회를 겸하고 조직원으로 포섭할 대상을 물색키로 하되 일정은 같은 달 6. 27~28. 양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로 하며, 박해전이 사회를 담당하고 정해숙이 개회사를 하고 황보윤식은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기로 합의 결정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에게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에 갔을 때 황보윤식이 박해전 등에게 대만유학을 떠나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갈만한 야유회 장소를 문의하자, 박해전이 금산의 수통리가 좋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황보윤식이 박해전 등에게 야유회 준비를 부탁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19) 박해전 범죄사실 15항(5), 황보윤식 8항(4), 김창근 7항(5)

판결은 1981. 6. 24. 21:00경 황보윤식의 집에서 황보윤식, 박해전, 김창근이 만나 수통리 수련회 준비를 협의하면서 박해전이 황보윤식에게서 수련회에 참석할 대전공업고등기

10) 당시 대전공업기술고등학교와 성남여고 학생들의 모임 명칭이다.



술학교 교사 신용과 동교 학생 최재열, 박광규, 김충호를 포섭하라는 말을 듣는 등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에게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황보윤식이 박해전에게 수통리에 신용, 박경옥과 학생 3~4명이 간다고 말하며 자신의 유학으로 김정고시반이 없어질 염려가 있으니 김정고시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의 뜻을 잘 이해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김창근에게 천막과 부식을 준비해 달라고 한 뒤 헤어졌던 점은 인정된다.

20) 박해전 범죄사실 15항(6), 황보윤식 8항(5), 정해숙 11항(2), 김창근 7항(6), 이재권 10항(2), 신용 1항, 박경옥 1항, 최재열 1항

판결은 1981. 6. 27.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수통리 강변에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등이 만나 황보윤식의 민족사관에 감회를 받은 신용, 박경옥, 최재열, 김충호, 박광규, 정진태, 신동연, 오세학, 길동극, 이재환, 최구호, 이종옥, 박○○, 오○○, 류○○, 박○○, 박○○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예정된 아람회의 수련회를 개최하여, 정해숙이 개회사에서 “농촌은 수탈당하고 있다. 피땀 흘려 일하고도 콩보리밥에 된장국만 먹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복지국가냐”고 역설하고, 황보윤식이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민중을 무시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전대통령은 민중을 무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막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받아들여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조선의 최대의 적은 미국이다”라고 역설하자, 박해전이 사회를 보면서 “제3세계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 통일성업에 장애가 되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혁명적인 각오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김창근은 학생들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면서 “북한의 통일노선에 따라야 한다”,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세계는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고 역설하고, 오락시간이 되자 박해전의 선창으로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등이 북괴 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 등을 합창하고, 황보윤식은 그 자리를 피하는 여학생들에게 “여성동무들 이리 오시오”라고 북괴 상투용어를 사용하고, 다시 황보윤식이 “김선생아 빨리 오소” “반동이다 반동이다”, “양키들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을 선창하자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등이 “꽤지나 칭칭나네”를 후창으로 따라하고, 박해전, 황보윤식이 모닥불 장작개비를 번쩍 쳐들고 “김일성 장군을 의한 건배” 등을 외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

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함과 동시에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동법 제7조 찬양고무죄, 동법 제8조(회합·통신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및시위금지)제1항 위반죄를, 이재권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동법 제8조(회합·통신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및시위금지)제1항 위반죄를,¹¹⁾ 신용, 박경옥, 최재열에게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해숙이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콩보리밥’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황보윤식이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역사는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옛날 봉건시대에는 임금밖에 자유가 없었으나 역사가 발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학생 최재열이 “일본놈들이 심심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말하자, 박해전이 “안보의 의미는 민족을 외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은 적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외세가 적이다”라고 말하였고, ‘정의파가’ 등 운동권 노래를 부르고 ‘쾌지나 칭칭나네’의 앞부분을 개사하여 ‘김선생아 빨리 나오소’, ‘민주인사 석방하라’, ‘세상살기 어렵구나’라고 부른 일이 있고, “양키들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 비방, 북한 노래를 부르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말이나, 김일성 장군을 위한 건배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막고 있다”,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동리 강변에서의 모임에 사회불안을 야기할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1) 박해전 범죄사실 15항(7), 황보윤식 8항(6), 정해숙 11항(3)

판결은 1981. 7. 9. 17:00경 서울 관악구 평창냉면 집에서 박해전, 정해숙이 만나 대화중 박해전이 1980. 12.경 서울대학교 잔디밭에서 습득한 현 정권이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매판군사파쇼정권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 반정부 선동을 내용으로 하는 『반파쇼학우투쟁선언』 제목의 유인물을 옮겨 쓴 노트를 정해숙에게 보여주고, 정해숙이 이를 옮겨 써

11)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개정 1980.12.18. 법률 제3278호)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어야겠다고 하자 그 노트를 주어 옮겨 쓰게 하고, 같은 달 11. 21: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무실에서 황보윤식을 만나 그 노트를 신용, 박경옥 등에게 낭독하여 주는 등으로 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동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황보윤식, 정해숙에게 동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해전이 가져온 『반파쇼학우투쟁선언』 제목의 유인물을 정해숙이 옮겨 쓰고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에서 황보윤식 등에게 보여준 점은 인정된다.

22) 박해전 범죄사실 15항(8), 신용 2항, 박경옥 2항, 최재열 2항

판결은 같은달 11. 17: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박해전, 신용, 박경옥, 최재열, 김충호, 박광규, 유준중 등이 만나 대화중 박해전이 이들에게 시드니 후크 저 양호원 역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의 290~292페이지에 수록된, 레닌이 1920년 공산주의청년동맹에 부친 인사말을 간추려 정리한 ‘공산주의의 도덕’이라는 항목을 읽어준 다음, “맑스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와 사유재산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좋다”, “우리나라는 자본가들에게 농민의 피를 착취당하고 있어 모순이 많다. 이제 공산주의 이론도 받아들여야 한다”, “무산계급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북괴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동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신용, 박경옥, 최재열에게는 동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해전이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이라는 서적 중 ‘공산주의의 도덕’이라는 부분을 읽어준 뒤 맑스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등의 발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23) 박해전 범죄사실 15항(9)

판결은 1981. 7. 12. 13: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실에서 박해전이 도덕 강의를 하던 중 김충호, 박광규, 오세학, 유준중, 길동극, 강진구, 이종옥에게 “농민들은 부르주아한테 착취당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빈부의 차이가 없어 잘살아 좋다”고 말하는 등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

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북한 괴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동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해전이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한다고 하면서 이상적인 이론이라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달리 공산주의를 찬양하였다는 발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법정에서 당시 학생 김충호 등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을 하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충호는 1주일 정도 구금상태에서 경찰의 강요로 시인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피해를 우려하여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박광규는 7~9일 가량 구금되어 잠을 자지 못한 채 경찰의 강요로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인으로 두려움에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오세환은 경찰관이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을 때 ‘나중에 진술조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김충호 등의 증언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4) 박해전 범죄사실 15항(10), 황보윤식 8항(7), 김창근 7항(7), 신용 3항, 최재열 3항

판결은 1981. 7. 12. 21:00경 황보윤식의 집에서 황보윤식, 박해전, 김창근, 신용, 최재열, 라○○ 등이 만나 대화중 황보윤식이 “세계 제일의 침략국은 미 제국주의다”, “민족을 해치는 게 바로 적인데 그 죄인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광주사태 때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은 발말뚝(全대통령을 지칭하는 말) 때문이다”, “우리 경제5개년계획은 북한의 경제정책을 모방한 것이다”, “월맹이 통일하듯 우리도 남쪽에 의하든 북쪽에 의하든 통일만 되면 된다”고 역설하고,

박해전은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후진국 식민지들이 폭력이 없었으면 독립할 수 없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가 아니다”, “프랑스 미테랑 후보가 평양을 방문, 김일성을 만난 사실을 아느냐. 남쪽이 좋았으면 남쪽을 방문하였을텐데 왜 북쪽을 방문했겠느냐”,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자”고 역설하는 한편, 송○○에게 “여성동무, 위에 앉으시오”라고 북괴의 상투어를 사용하고, 김창근은 “미국이 우방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함과 동시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



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해전, 황보윤식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동법 제7조 찬양고무죄, 동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김창근에게 동법 제7조 찬양고무죄, 동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신용에게 동법 제10조 불고지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라○○이 폭력의 윤리적인 면에 대해 박해전에게 문자, 박해전이 프란츠 파농의 저서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이 참고가 된다고 하면서 알제리는 2차대전 후에 독립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 대항하여 싸워서 겨우 독립을 했다고 말했고, 라○○이 북한을 폐쇄적인 사회처럼 이야기하자 박해전이 프랑스 미테랑 후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난 것을 아느냐고 하면서 “미테랑이 자신의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이 컸다면 남한을 방문했을 것이고, 그 영향이 북한에 크게 작용하였다면 북한을 방문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황보윤식이 전두환을 ‘발말뚝’이라고 표현하며 비방언동을 하고, 우리 경제5개년계획에 대해 말하면서 ‘자유주의체제에서는 계획경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월맹통일을 언급하면서 ‘이념논쟁을 관두고 통일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발언은 인정하기 어렵다.

25) 황보윤식 범죄사실 1항

판결은 1980. 10. 초순 일자미상 10: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황보윤식이 당시 포고령으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국가원수 모독비방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교생 이종욱 등 40여 명에게 세계사 수업을 하면서 광주사태는 현 대통령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한 다음 “앞으로 북한이 우리를 통일시킬 것이며 김일성을 찬양한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역설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고 소위 평화노선, 미군철수 주장 등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황보윤식에게 반공법 제4조 찬양고무죄, 포고령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황보윤식이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학생이었던 김○○ 등이 1심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을 하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강압에 의해 당시 구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과 다른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염정경은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무섭게 유도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자술서를

보면서 자신에게도 같은 내용을 인정하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증언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6) 황보윤식 범죄사실 6항

판결은 1981. 5. 중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무실에서 황보윤식, 최재열, 박광규가 대화하던 중 황보윤식이 최재열, 박광규에게 “테러단을 만들어 사회에서 배부르게 먹고 착취하는 자들을 죽이겠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우리의 적이다. 경제군사원조를 하는 척하면서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려 하고 민족분단도 그 한 가지 원인이다. 양키 놈들을 몰아내고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통일만 되면 잘살 수 있다”고 역설하는 등으로 미군철수 주장 등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황보윤식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황보윤식이 위의 발언들을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박광규가 1심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광규는 7~9일 가량 구금되어 잠을 자지 못한 채 경찰의 강요로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두려움에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광규의 증언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7) 황보윤식 범죄사실 8항(3)

판결은 1981. 6. 중순 황보윤식의 집에서 황보윤식, 신용, 박경옥, 최재열, 김충호, 박광규, 이종욱 등이 만나 대화하던 중 황보윤식이 이들에게 “김재규는 사형선고 3일 전에 미국에 망명하였다”, “지금 감방 안에는 이 민족을 통일시킬 역군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등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대남비방선전 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황보윤식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재규가 사형선고 3일 전에 미국에 망명했다”, “민족분단의 비극으로 인해 감방 안에는 영웅이 많이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8) 황보윤식 범죄사실 8항(8)

판결은 1981. 7. 13. 21:00경 황보윤식의 집에서 황보윤식, 라○○, 윤○○ 등이 만나 대화하던 중 황보윤식이 이들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제일 먼저 부른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의 선거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이다”, “북쪽에 의하여 통일되든 남쪽에 의하여 통일되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한민족으로 합쳐어지는데 공산주의면 어떻게 민주주의면 어떠냐”, “경제체제는 공산주의체제가 좋다”, “이북 농촌은 발전하여 스프링쿨러 같은 시설도 되어 있다”, “남쪽에 우리와 같은 세력이 강대해지면 통일이 될 것이다”, “국기계양식에 경례를 하는 것이나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존칭을 붙이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역설하는 등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폐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황보윤식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동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황보윤식이 라○○, 윤○○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제일 먼저 부른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의 선거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나 “북쪽에 의하여 통일되든 남쪽에 의하여 통일되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한민족으로 합쳐어지는데 공산주의면 어떻게 민주주의면 어떠냐”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었고,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못 살고 찌든 것은 아니다”, “민주세력이 커지면 통일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이야기 속에 “국기계양식에 경례를 하는 것이나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존칭을 붙이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9) 황보윤식 범죄사실 8항(9), 신용 4항

판결은 1981. 7. 15. 13: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무실에서 황보윤식과 신용이 대화하던 중 황보윤식이 “북한이 제의한 고려연방제는 이상적인 정치형태다”라고 말하여 북한 괴뢰집단의 고려연방제에 의한 소위 평화통일노선을 찬양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황보윤식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신용에게 동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이 주위 온 불온전단의 내용 중에 고려연방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신용이 황보윤식에게 고려연방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황보윤식이 남북 지도자가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30) 정해숙 범죄사실 1항, 김현칠 2항

판결은 1980. 6. 일자미상 13:00경 정해숙의 집에서 정해숙, 김현칠이 대화하던 중 정해숙은 금산천주교회에서 입수한 1980. 5. 광주사태에 관하여 당국이 경상도 출신 공수특전단을 투입, 지역감정을 유발해서 70세 노파를 칼로 찔러죽이고 광주역 분수대에다 여학생을 발가벗겨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이는 등으로 평화적 시위를 한 학생, 시민들을 무차별 살육하였다는 유언비어가 기재된 조선대학교 민족투쟁위원회 명의의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당시 그곳은 비상계엄지역 내로서 1980. 5. 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칠과 이를 등사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김현칠이 위 금산을 소재 금산신용협동조합에서 동 유인물 40장을 등사하여 송○○에게 1장, 같은 읍 금산여자고등학교 교정에서 김○○, 전○○에게 각 1장, 같은 읍 상리 25 이재권의 집에서 동인에게 2장, 동 김현칠의 집에서 김창근에게 10장을 각 배포하여 열람케 하고, 정해숙은 자기 집에서 박해전에게 1장을 배포 열람케 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해숙, 김현칠에게 포고령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현칠이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정해숙과 상의하여 위 유인물을 등사,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1) 정해숙 11항(4), 김현칠 범죄사실 8항

판결은 1981. 7. 13. 13:00경 서울 봉천우체국에서 정해숙이 위 「반파쇼학우투쟁선언」을 옮겨 쓴 것을 이재권에게도 보여주라는 편지와 함께 금산의 김현칠에게 우송하여 다음날 18:40경 김현칠이 받아보게 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같은 해 7. 14. 18:40경 김현칠은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사무실에서 정해숙이 우송한 「반파쇼학우투쟁선언」등을 받아 열람하고, 같은 달 20. 금산우체국에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7의 30 이경석 방으로 정해숙에게 위 선언문을 받아보고 마음의 재무장을 다짐해보았으며 위 선언문을 나름대로 활동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우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해숙, 김현칠에게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해숙이 김현칠에게 「반파쇼학우투쟁선언」을 옮겨 쓴 것을 이재권에게도 보여주라는 편지를 보냈으며, 김현칠이 정해숙에게 위 선언문을 나름대로 활



용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32) 이재권 범죄사실 1항

판결은 1980. 6. 일자미상 13:00경 금산읍 금산 새마을금고에서 이재권은 당시 그곳은 위 포고령 10호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고 직원 송○○, 김○○, 고○○, 최○○, 여○○ 등에게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회람케 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재권에게 포고령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권이 마을금고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김현철 범죄사실 1항

판결은 1979. 12. 9. 11:00경 위 금산읍 성원식당에서 금산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를 개최하여 담소중 김현철은 당시 그곳이 비상계엄지역 내로서 계엄사령관의 1979. 10. 27.자 포고령 제1호에 의하여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철 등 40여 명에게 “우리나라 정치는 군이 버렸다”, “최규하는 허수아비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김현철에게 포고령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현철이 동창회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34) 김난수 군법회의 범죄사실 4항

판결은 1981. 5. 초 일자미상 저녁에 김난수의 집에서 황보윤식, 박해전 등이 모여 자신들의 진로에 관해 숙의하면서 황보윤식이 자유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서 김난수에게 추천교수를 소개해 달라고 하자, 박해전이 황보윤식에게 “대만은 사상적 통제를 받는 곳이어서 획일적인 인간이 되기 쉽고, 일본은 사상적 통제가 없고 공산서적의 구입 및 공산계열의 해외동포 접촉이 쉬우니 일본으로 유학가라”고 하였고, 이에 황보윤식이 “대만으로 유학 가도 홍콩을 통해 중공이나 북한 계열의 해외동포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해외유학을 구실삼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국외 공산계열과 연계를 획책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충남대 국문과 교수 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줌으로써 위 황보윤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김난수에게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황보윤식이 김난수에게 대만유학을 가는데 추천교수가 필요하다고 하자, 김난수가 조○○ 교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발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1) 반국가단체구성 또는 이적단체구성

위 나의 1)항 행위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구성죄 또는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조직의 실체나 강령이나 규약도 없으며, 모임의 성격도 단순한 친목에 있을 뿐 반국가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한 대전지법 또는 군법회의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찬양고무

위 나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20), 22), 23), 24), 25), 26), 28), 29)항 등 23개 행위에 대하여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고 있는바, 1980. 12.까지 행위에 대하여는 구(舊)반공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¹²⁾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인정한 내용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이론적인 토론이나 일상적인 대화 등에 대해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통해 조작하거나 왜곡한 것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찬양고무 조항은 “헌법상 평화통일 지향과 양립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헌법상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거나,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恣意的) 지배에 의해 내부체제를 파괴·변형시키려는 경우에

12)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는 반공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가 1980. 12. 31.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옮겨 규정되었다.



만 적용된다.¹³⁾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된 사실을 보면 그 발언내용이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거나 이론적인 또는 일상적인 내용들이므로, 그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데다가 위헌의 요소가 있는 찬양고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목적수행, 회합통신 또는 편의제공, 불고지

위 나의 2), 4), 6), 7), 9), 10), 11), 12), 20), 22), 24), 29)항 등 12개 행위에 대하여 불고지죄를, 위 나의 15), 16), 17), 18), 19), 20), 21), 24), 31)항 등 9개 행위에 대하여 회합통신죄를, 위 나의 20), 21), 22), 23), 24), 27), 28)항 등 7개 행위에 대하여 목적수행죄를, 위 나의 34)항에 대하여 편의제공죄를 적용하였다. 먼저, 그 전제사실인 피해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찬양고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목적수행, 회합통신 또는 편의제공, 불고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찬양고무 발언을 듣고 수사기관에 불고지하였다는 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¹⁴⁾

4) 불법집회

위 나의 20)항 행위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수통리 야유회는 도심지도 아닌 수통리 강변에서 고등학교 교사인 황보윤식이 대만유학을 가기 전에 송별모임을 할 겸, 평소 학업에 지친 제자들의 머리를 식힐 겸 마련된 친목모임이며, 사회불안을 야기할 요인이 있는 집회라 볼 수 없다.

5) 계엄법(계엄포고령)위반

위 나의 2), 25), 30), 32), 33)항 등 5개 행위에 대하여 계엄법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위 계엄법 위반 부분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3) 헌법재판소 89헌가113(1990. 04. 02) 참조.

14) 1991. 5. 31.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내용 중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동법 제7조 관련 불고지는 삭제되었다.

VI. 결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에 대하여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 등에 의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으로,

대전경찰서는 대전고등학교 학생 라○○의 제보를 받고 같은 학교 교련교사가 전화신고를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주거지, 식당 등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일 내지 35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충청도경 대공분실과 여관 등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 자백을 근거로 하여 반국가단체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검은 충청도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일부 수사관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대전지법에 기소하였다.

대전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결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자백에 의존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서울고법은 반국가단체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2. 권 고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경찰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



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